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후 : 하나UBS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펀드명 변경
- 전환 대상 펀드명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1.25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 글로벌 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1.하나UBS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하나UBS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

	3.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재간접형]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1.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1항 1. 하나UBS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5등급(낮은 위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펀드명 변경 - 전환 대상 펀드명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투자신탁 결산 후 수익률 변동성 변경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table>
<tr><td>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삭제></td></tr>
<tr><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 rowspan="2">60% 이상</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r>
</table>
(3) 비교지수 :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는 JPMorgan 증권이 만든 채권지수로서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의 국채,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 종합지수입니다.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td><td>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60% 이상</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r>
</table>
(3) 비교지수 :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World Index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td></tr>
</table>

	인덱스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고배당 주식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로, 미달러로 표시되는 지수입니다.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는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입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해외 채권 및 주식, 리츠, 인프라, 금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자산배분 투자를 하게 되므로 비교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2014년 5월 2일 비교지수가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삭제>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 주요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삭제>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5.51%임에 따라 6 등급 중 4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 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98%임에 따라 6 등급 중 5 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2)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①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②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1) 수익증권의 전환 2)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①하나UBS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②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포함되지 않고 기재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도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약 연 0.26%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 비교지수: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주2) 2014년 4월 21일 비교지수가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World Index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

		주2)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2014년 5월 2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위험등급	4등급(보통 위험)	5등급(낮은 위험)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I 집합투자	**보수**	**보수** (업데이트)

기구의 개요	※ 주석사항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석사항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포함하지 않고 기재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도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약 연 0.26%로 추정한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 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는 JPMorgan 증권이 만든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채권지수로서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의 국채,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 종합지수입니다.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인덱스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고배당 주식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로, 미달러로 표시되는 지수입니다.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World Index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는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입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해외 채권 및 주식, 리츠, 인프라, 금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자산배분 투자를 하게 되므로 비교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주2) 2014년 5월 2일 비교지수가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삭제>
	2. 투자전략	**2. 투자전략**

<table>
<tr><td></td><td>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 rowspan="2">60%이상</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이하</td></tr></table>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60% 이상</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r></table>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삭제></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5.51%이며,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td><td>[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4.98%이며,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3. 운용전문인력
(생략)</td><td>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tr>
<tr><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td>4. 투자실적 추이
(주 1) 비교지수 :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td><td>4. 투자실적 추이
주1) 비교지수: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td></tr>
</table>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World Index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 주2)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2014년 5월 2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추가) 주3) 종류형 C 수익증권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되었으며, 나머지 종류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4)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I. 집합투자	**2. 전환절차 및 방법 가. 수익증권의 전환**	**2. 전환절차 및 방법 가. 수익증권의 전환**

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1)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1)하나UBS 글로벌 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 재형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후 : 하나UBS 재형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펀드명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1.25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재형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 재형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 하나UBS 재형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5.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6. 하나UBS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 하나UBS 재형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1. 하나UBS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하나UBS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제16조(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제45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 한다.	③ (삭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재형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 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2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추가>	- 펀드명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삭제>

	(3) 비교지수 :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는 JPMorgan 증권이 만든 채권지수로서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의 국채,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 종합지수입니다.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인덱스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고배당 주식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로, 미달러로 표시되는 지수입니다.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는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입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해외 채권 및 주식, 리츠, 인프라, 금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자산배분 투자를 하게 되므로 비교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2014년 5월 2일 비교지수가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3) 비교지수 :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World Index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삭제> .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포함되지 않고 기재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도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약 연 0.26%로 추정한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 비교지수: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주2) 2014년 4월 21일 비교지수가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World Index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 주2)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2014년 5월 2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재형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 재형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 주석사항**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보수** (업데이트) **※ 주석사항**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해당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포함하지 않고 기재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도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약 연 0.26%로 추정한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는 JPMorgan 증권이 만든 채권지수로서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의 국채,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 종합지수입니다.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①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World Index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인덱스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고배당 주식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로, 미달러로 표시되는 지수입니다.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는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입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해외 채권 및 주식, 리츠, 인프라, 금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자산배분 투자를 하게 되므로 비교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주2) 2014년 5월 2일 비교지수가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삭제>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투자 대상 / 투자 비율 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 60%이상	투자 대상 / 투자 비율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 / 60% 이상

<table>
<tr>
<td></td>
<td>
<table>
<tr><td>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이하</td></tr>
</table>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
<td>
<table>
<tr><td>재간접형]</td><td></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r>
</table>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삭제></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3. 운용전문인력
(생략)</td>
<td>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4. 투자실적 추이
(생략)

<주석 추가></td>
<td>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World Index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td>
</tr>
</table>

		주2)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2014년 5월 2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변경전 :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후 :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펀드명 변경
- 전환 대상 펀드명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1.25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8.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9.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①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으로 한다.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삭제> 3. 하나UBS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4. 하나UBS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재간접형]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3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제3조제4항제1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제3조제4항제2호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제52조의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본문, 생략) 1.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1항 (본문, 생략, 이전과 동일) 1. 하나UBS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펀드명 변경 - 전환 대상 펀드명 변경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7.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table>
<tr>
<td>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td>
<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 rowspan="2">60% 이상</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r>
</table>
(3) 비교지수 :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는 JPMorgan 증권이 만든 채권지수로서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의 국채,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 종합지수입니다.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인덱스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고배당 주식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로, 미달러로 표시되는 지수입니다.
</td>
<td>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1)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
<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60% 이상</td></tr>
<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r>
</table>
(3) 비교지수 :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World Index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
</td>
</tr>
</table>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는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입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해외 채권 및 주식, 리츠, 인프라, 금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자산배분 투자를 하게 되므로 비교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2014년 5월 2일 비교지수가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삭제> . 다.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시장 국면에 따라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2)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다. 전환 2)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사항	①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②하나 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①하나 UBS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②하나 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3)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포함되지 않고 기재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도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약 연 0.26%로 추정한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1) 비교지수: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1) 비교지수: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주2) 2014년 4월 21일 비교지수가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World Index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 주2)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2014년 5월 2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펀드명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집합투자기구 특징**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보수 **※주석사항**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기초로 종류 수익증권에 안분하여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비용을 약 연 0.56%로 예상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수** **※주석사항**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포함하지 않고 기재될 수 있습니다. 상기의 도표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비용을 약 연 0.26%로 추정한 수치이며,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고 변동될 수 있습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1]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주식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 및 국내외 채권이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JPMorgan Global Aggregate Bond Index 는 JPMorgan 증권이 만든 채권지수로서 선진국 및 이머징 국가의 국채, 회사채 등으로 구성된 종합지수입니다.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USD, Net Total Return) 인덱스는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고배당 주식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수로, 미달러로 표시되는 지수입니다. 주1) 이 집합투자기구의 비교지수는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입니다. 그러나 시장상황 및 운용역의 판단에 따라 당사가 해외 채권 및 주식, 리츠, 인프라, 금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자산배분 투자를 하게 되므로 비교지수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수는 다른	투자대상자산으로 합니다. ■ **비교지수 :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World Index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되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table>
<tr>
<td></td>
<td>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주2) 2014년 5월 2일 비교지수가 변경되었으며 변경전 비교지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td rowspan="2">60%이상</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이하</td></tr></table>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하나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모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td>
<td><삭제>

2. 투자전략
1) 모투자신탁에의 투자
<table><tr><th>투자 대상</th><th>투자 비율</th></tr><tr><td>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td><td>60% 이상</td></tr><tr><td>하나 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td><td>40% 이하</td></tr></table>
3)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등
<삭제></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td>
<td>3. 운용전문인력
(생략)</td>
<td>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td>
</tr>
<tr>
<td>II. 집합투자기구의</td>
<td>4. 투자실적 추이
(주 1) 비교지수 :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T-1)*60% +</td>
<td>4. 투자실적 추이
(주1) 비교지수: Bloomberg Barclays Global Treasury Total Return Index</td>
</tr>
</table>

투자정보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T-1)*30%+Call*1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Value Unhedged USD (BTSYTRUU Index)*19.5% + iBoxx USD Liquid Investment Grade Index (IBOXIG INDEX)*13% + Bloomberg Barclays VLI: High Yield Total Return Index Value Unhedged USD (LHVLTRUU INDEX)*6.5% + 매경BP종합지수 (KBPMABIN INDEX)*22.8% + MSCI World Index (MXWO INDEX)*15.8% + MSCI EM Index (MXEF INDEX)*7% + KOSPI200 (KOSPI2 INDEX)*7% + RICI (Rogers International Commodity Index) (RUGL INDEX)*1.7% + EPRA/NAREIT Developed Index (RICIGLER INDEX)*1.7% + Call*5% 주2)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최초 설정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Morgan EMBI Global Index 30%(t-1)+BofA Merrill Lynch US High Yield Cash Pay Constrained Index 30%(t-1)+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 2014년 5월 2일부터 2017년 1월 24일까지 [JPM Global Aggregate Bond Index 60%] + [MSCI World High Dividend Yield Index 30%] + [Call 10%]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종류형 A 수익증권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되었으며, 나머지 종류형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III.	**2. 전환절차 및 방법**	**2. 전환절차 및 방법**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가. 수익증권의 전환 (2)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1) 하나 UBS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 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인컴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가. 수익증권의 전환 (2) 전환대상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투자신탁을 말합니다. 1) 하나 UBS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2) 하나 UBS 월지급식 글로벌 멀티에셋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She&Style 증권자투자신탁(제1호)[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운용역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01.25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 She&Style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2.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④이 투자신탁은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나UBSFirstClass연금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해지된 모투자신탁 삭제 - 비교지수 변경 - 운용역 변경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제2부 집합투자기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나성욱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오현정

구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하나UBS She&Style 증권모투자신탁(제1호)[주식]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하나 UBS She & 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삭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하나UBS She&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비교지수(Benchmark) : **(KOSPI200 생활소비재지수 * 40%)+(KRX Health care Index *10%)+(KOSPI * 50%)** 주1) 이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200 생활소비재지수 * 40%)+(KRX Health care Index *10%)+(KOSPI * 50%) 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삭제>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100%** 주1)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성과비교를 위해 KOSPI 100%를 비교지수로 사용합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 등장에 따라 변경된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생략)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업데이트) 다.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연간기준 예시표 (업데이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주1) 비교지수**: (KRX Consumer Index * 40%)+(KRX Health care Index *10%)+(KOSPI * 5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가. 연평균수익률 (세전기준)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기준) 주1) 비교지수 : **KOSPI 100%** 주2)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RX 생활소비재지수 * 40%)+(KRX Healthcare Index *10%)+(KOSPI * 50%)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하나UBS She&Style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비교지수(Benchmark) : (KOSPI200 생활소비재지수 * 40%)+(KRX Health care Index *10%)+(KOSPI * 50%) ※ 집합투자기구는 국내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므로 (KOSPI200 생활소비재지수 * 40%)+(KRX Health care Index *10%)+(KOSPI * 50%) 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1] 투자전략** <삭제> • 비교지수(Benchmark) : **KOSPI 100%** ※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KOSPI 100%** 를 비교지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수는 다른 지수로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될 것입니다.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3. 운용전문인력** 나성욱	**3. 운용전문인력** 오현정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생략) 주1) 비교지수 = (KOSPI200 생활소비재지수 * 40%)+(KRX Health care Index *10%)+(KOSPI * 50%)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 (업데이트) 주1)비교지수 = **KOSPI 100%** 상기의 비교지수는 2017년 1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KRX 생활소비재지수 * 40%)+(KRX Healthcare Index *10%)+(KOSPI * 50%) 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엄브렐러뉴인덱스증권투자신탁(K-1호)[주식-파생형]

2. 주요 변경내용

1)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2) 매매·평가이익 유보 반영
3) 해지된 전환 대상 펀드 삭제
4)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1월 2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17 조(투자 대상자산 등)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	제1항 2.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

	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제 18 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6. 환매조건부매매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제 19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2호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0 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신설>	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 자산을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부도 등으로 유예기간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의 즉각적인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시행일 : 2017년 1월 2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

제 45 조(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생략),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생략).	④(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생략, 현행과 동일).
제 52 조의 2(투자신탁의 전환)	제1항 4.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제3항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에서 (이하 생략) 3. 제1항제7호 및 제8호에서 (이하 생략) 4. 제1항제9호에서 (이하 생략) 제5항 1.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2. (생략) 다만, 제1항제9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제1항 4. <삭제> 제3항 2. 제1항제3호 및 제5호에서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3.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4. 제1항제8호에서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제5항 1. (생략)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현행과 동일) 1. (생략) 다만, 제1항제8호로 전환청구한 경우 (생략, 현행과 동일)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월 25일 1) 투자대상자산 '취득시' 신용평가등급 적용 반영 2)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3) 해지된 전환 대상 펀드 삭제 4)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5) 자본시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등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1**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종류 A-U]) 하나 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전환형 구조 1**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환(엄브렐러 클래스 펀드[종류 A-U]) <삭제>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2. 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2. 채권 및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4.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7. 환매조건부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나. 투자제한** **<동일종목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 목의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파생결합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집합투자규약에서 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하나 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②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다. 전환 - 엄브렐러 클래스(A-U) 간의 전환 (1) 전환형 구조 (삭제) (2) 전환 절차 및 방법 ②하나 UBS 코리아중소형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IT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증권자투자신탁[주식], 하나 UBS IT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하나 UBS 밸류코리아 증권자투자신탁[주식] (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2017년 1월 25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 현행과 동일)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III. 집합투자기구의 기타 정보	**2. 전환절차 및 방법** 하나UBS 승승장구 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전환절차 및 방법** (삭제)

변 경 대 비 표

1. 대상펀드 : 하나UBS 라이프플랜퇴직연금장기 증권자투자신탁[국공채]

2. 변경내용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3. 효력발생일 : 2017년 1월 2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33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시행일 : 2017년 1월 25일)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신설)**	**제2항** 5. 2015년 1월 1일 이후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개

		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9 조 (금전차입 등의 제한)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 및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④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⑧ 제 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순차적 연번 변경)

[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월 25일 - 매매, 평가이익 유보 반영 -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주석추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주3)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2)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자집합투자기구** (2) 기타 제한 사항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 제48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규약 제49조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1) 투자대상 7. 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나. 모집합투자기구** **- 하나 UBS 퇴직연금장기 증권모투자신탁[국공채]** 1) 투자대상 7. 환매조건부 매매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 2) 투자제한 **동일종목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이 1.70%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6%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합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2017 년 1 월 25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 (신설)	**나. 과세**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생략)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생략)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생략) 주2)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현재(2008년 12월 31일)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추가)	**1. 재무정보** (업데이트)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업데이트) 주2)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비교지수 수익률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생략)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최근일자 기준 업데이트)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생략)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이하 생략)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 총회 등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현행과 같음)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환매금

		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이하 현행과 같음)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신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생략)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이 투자신탁의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가. 정기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1)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 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공시할 것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법 제12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 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제 5 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6.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별첨]	**※ 퇴직연금 모자신탁 일람**	<삭제>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 (생략)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0%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1] 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 (업데이트) **[2] 주요 투자위험 및 위험관리** **2. 위험등급** - 이 투자신탁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직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연율화)]이 1.76%임에 따라 6등급 중 5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낮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월지급식 글로벌인프라 증권자투자신탁[주식]

2. 주요 변경내용 :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등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1월 25일

4. 대비표

[투자설명서(일괄신고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월 25일 투자신탁 결산 후 정기갱신 및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3) 투자제한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이하 생략)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제 1 항에 따라(이하 생략) - 제 1 항에 따른(이하 생략)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3) 투자제한 1)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82 조제 1 호 전단에 따라(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2) 금전차입 등의 제한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규약 제 49 조제 1 항에(이하 생략, 현행과 동일)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생략)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생략)	(업데이트)

[간이투자설명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보수 (생략)	보수 (업데이트)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생략)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생략)	**[1]투자전략** **3. 운용전문인력** (업데이트) **4.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채권-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1월 2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호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하나UBS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0.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1.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3호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하나UBS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0.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1.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등록신청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AE940)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AF120)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AE940)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AF120)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AG126)	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AG126)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월 25일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UBS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UBS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

변 경 대 비 표

1. 펀드명 : 하나UBS 글로벌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

2. 주요 변경내용 :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3. 변경효력발생일 : 2017년 1월 25일

4. 대비표

[집합투자규약]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	제3호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하나UBS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0.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1.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3호 이 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으로서 자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하나UBS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0.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11.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변경등록신청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AE940)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AF120)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AG126)	**1.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자투자집합투자기구의 명칭] 하나UBS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AE940)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AF120)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AG126)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가)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2017년 1월 25일 자투자신탁 명칭 변경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생략)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UBS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인컴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 모자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집합투자기구로써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UBS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하나UBS월지급식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 하나UBS재형글로벌멀티에셋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재간접형]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신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미국세금 원천징수 및 해외계좌**

		신고제도(FATCA)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FATCA 준수 목적으로, 특정 투자자의 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그러한 투자자에 대한 지급이 보류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미국 납세의무자들이거나 미국 납세의무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5)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및 공통보고기준(CRS)** 대한민국을 비롯한 기타 여러 국가들은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MCAA)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예정이며, 이의 이행을 위하여 OECD 에 의하여 마련된 금융계좌정보 자동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 for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협정의 일정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한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의 조세 당국 등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생략)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업데이트)